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 및 승인 대상 행위 추가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6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역 추가	2
2.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 대상 행위 추가	5
※ 참고자료	10
1.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0

I. 제안경위

2025년 4월 18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Ⅲ. 검토의견

1.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역 추가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그 밖에 <u>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습지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¹⁾,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인 ‘습지보호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2025.5.기준)

구 분	내 용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지정절차 (환경부-내 륙습지)	습지 기초조사 → 습지 정밀조사 →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지정현황 ³⁾	57개소, 약 1,750.965km ² (습지보호지역 1,748.526km ² , 습지주변관리지역 등 2.439km ²)

※ 출처: 환경부

최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

1) 「습지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3) < 참고자료 1.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통하여 습지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습지보호지역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의무화 되는 지역으로, 대상지역으로 지정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증축 등이 제한되므로4),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는 입법으로 인한 습지 및 동·식물보호 등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5).

- 4)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참고로, 「공항시설법」 및 동 법 시행규칙과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공항 표점 3킬로미터 또는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 일정 환경·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5.4.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 범위를 공항반경 13k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힘.
-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 제한이 설정되므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멸종위기종 서식 등의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⁶⁾.

2.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협의 대상 행위 추가

개정안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승인·협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행위 제한) ①·② (생략)	제13조(행위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 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 <u>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u> ----- ----- -----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습지보호 등을 위하여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⁷⁾.

7)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과 습지보호지역인 무안 갯벌간의 거리가 2.5km에 불과하고,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항공기와의 조류충돌이 언급되는 등⁸⁾ 습지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공항 등 설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⁹⁾.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생 략)
 -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KBS, 새 때 충돌 순간 영상 분석...”상승 중 부딪혔다.“(2025.05.02.)
- 9)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5.4.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조류탐지레이더와 드론 도입·활용, 예방인력 충원, 공항주변관리(상행협의체, 통합감시센터, 관리구역 관리)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협의를 거쳐야 하는 습지주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습지와 야생동·식물 보호 및 환경훼손과 대형참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협의 대상 사업에 공항이나 항만 건설사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습지보호 및 환경훼손·대형참사예방 가능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⁰⁾.

10)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 지정절차 : 습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지정·고시

□ 지정현황 : 57개 지역, 1,750.965km²(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환경부 지정 : 33개소, 137.741km ²				
낙동강하구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37.718	철새도래지	1999.08.09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1.360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1999.08.09 (‘97.03.28)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8.808 (주:0.261)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	1999.08.09 2023.11.13(확대) (‘98.03.02)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0.184	산지습지	1999.08.09 (‘07.12.20)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0.309	기생화산구	2000.12.05 (‘06.11.18)
화엄늪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0.124	산지습지	2002.02.01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067	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2.11.01 (‘07.12.20)
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일원	0.308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	2004.02.25
담양하천습지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0.981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습지	2004.07.08
신안 장도 산지습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대장도 일원	0.090	도서지역 최초의 산지습지	2004.08.31 (‘05.03.30)
한강하구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송뢰리 사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수면부 포함)	60.668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태계 발달	2006.04.17 (장항 ‘21.5.21)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0.587	절경이 뛰어나고 이탄층 발달, 멸종위기종 새 등 서식	2006.12.28
제주 1100고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 제주시 광령리 경계 일원	0.126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종 및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2009.10.01 (‘09.10.12)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10	산정화구호의 특이지형,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2009.10.01 (‘08.10.13)
제주 동백 동산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생물다양성 풍부, 북·남방계 식물 공존	2010.11.12 (‘11.03.14)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930 (개:0.133)	생물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	2011.03.14 (11.04.06)
상주 공검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0.264	생물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2011.06.29
영월 한반도습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2.772 (주:0.857)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총 8종의 법정보호종 서식	2012.01.13 (15.05.13)
정읍 월영습지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0.375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구렁이, 말뚝가리 등 멸종위기종 6종 서식	2014.07.24
제주 숨은물뱅디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5 (주:0.875)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귀개,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 분포	2015.07.01 (15.05.13)
순천 동천하구	전남 순천시 교량동,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5.656 (개:0.263)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물새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상당수 분포	2015.12.24 (16.01.20)
섬진강 침실습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섬진강 일원	2.037	수달, 남생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2016.11.07
문경 돌리네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0.494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고 국내 유일의 돌리네 습지	2017.06.15. (24.02.02)
김해 화포천	경남 김해시 한림면 진영읍 일원	1.298	황새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2017.11.23 2022.08.12.(확 대)
고창 인천강하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0.722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린 하구로서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	2018.10.24
광주광역시 장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2.735 (개:0.03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습지 원형이 잘 보존된 도심 내 하천습지	2020.12.08 2022.08.12.(확 대)
철원 용양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일원	0.519	장기간 보전되어 자연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서식환경을 지녀 생물다양성 풍부	2020.12.08
충주 비내섬	충북 충주시 양성면, 소태면 일원	0.920	자연성 높은 하천경관 보유한 하천습지로 다수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 우수	2021.11.30
경남 고성 마동호	경남 고성군 마암면, 거류면 일원	1.079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2022.02.03
순천 와룡 산지습지	전남 순천 와룡동 산277번지 일원	0.899	폐경작(廢耕作) 이후 자연적 천이에 의해 습지원형으로 복원된 생물다양성 높은 산지습지	2022.12.30
대전 갑천	대전 서구 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0.901	하천퇴적층 발달하여 자연상태의 원시성 유지, 멸종위기종 포함 생물다양성 풍부	2023.06.05
철원 이길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이길리 일대	1.390	하천의 자연성 우수하며, 철새 주요 월동지로서 생물다양성 풍부	2023.12.29
영양 장구메기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일대	0.045	산지에 위치한 묵논습지로 다양한 야생생 물 서식 및 안정적인 습지생태계 형성·유 지	2024.09.10
해양수산부 지정 : 17개소, 1,604.97km ²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	113.34	생물다양성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	2001.12.28 (08.01.14)
진도갯벌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고군면 일원(신동지역)	1.44	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	2002.12.28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순천만갯벌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28.0	흑두루미 서식·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	2003.12.31 (‘06.01.20)
보성·별교 갯벌	전남 보성군 호동리, 장양리, 영동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33.92	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	2018.09.03 (‘06.01.20)
웅진·장봉도 갯벌	인천 웅진군 장봉리 일대	68.4	희귀철새 도래·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	2003.12.31
부안·줄포만 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	4.9	자연성 우수 및 도요새 등 희귀철새 도래·서식	2006.12.05 (‘10.12.13)
고창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면(I 지구), 심원면(II 지구) 일원	64.66	광활한 면적과 빼어난 경관, 유용수자원의 보고	2018.09.03 (‘10.12.13)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비인면, 중천면 일원	68.09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빼어난 자연경관	2018.09.03 (‘10.09.09)
신안갯벌	전남 신안군	1,100.86	빼어난 자연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염생식물, 저서동물)	2018.09.03 (증도 ‘11.09.01)
마산만·봉암갯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	0.1	도심습지,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2011.12.16
시흥갯벌	경기 시흥시 장곡동	0.71	내만형 갯벌, 희귀·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도래 지역	2012.02.17
대부도갯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안갯벌	4.53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2017.03.22 (‘18.10.25)
화성·매항리갯벌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주변 갯벌	14.08	철면초군락 등 염생식물과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 풍부한 갯벌	2021.07.20
고흥갯벌	전남 고흥군 여자만 주변지역 갯벌	59.43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 및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 풍부한 갯벌	2022.12.29
사천·광포만	경남 사천시 광포만 주변지역 갯벌	3.46	넓은 염생식물 군락 및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 풍부	2023.10.23
제주 오조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변지역 갯벌	0.24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생물다양성 풍부	2023.12.21
여수 갯벌	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주변지역 갯벌	38.81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 풍부	2024.07.30
사·도·지·사 지정 : 7개소, 8,254km ²				
대구·달성 하천습지	대구 달서구 호림동, 달성군 화원읍	0.178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철새도래지, 노랑어리연꽃, 기생초 등 습지식물 발달	2007.05.25
대청호 추동습지	대전 동구 추동 91번지	0.346	수달, 말뚝가리, 흰목물떼새, 청딱따구리 등 희귀 동물 서식	2008.12.26
송도갯벌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	6.11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도요, 말뚝가리 등 동아시아 철새이동경로	2009.12.31 (‘14.07.10)
경포호·가시연습지	강원 강릉시 윤정동, 안현동, 초당동, 저동일원	1.314 (주0.007)	동해안 대표 석호,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가시연 서식	2016.11.15
순포호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	0.133	멸종위기종 고급 순채서식, 철새도래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	2016.11.15
쌍호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일원	0.139 (주0.012)	사구 위에 형성된 소규모 석호, 동발 서식	2016.11.15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가평리습지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일원	0.034	해안 충적지에 발달한 담수화된 석호로 꽃창포, 부채붓꽃, 털부처꽃 서식	2016.11.15

(주)습지주변관리지역, (개)습지개선지역

※ 출처: 환경부